

●●● 권익위 조사관들이 국민과 함께 겪은 현장의 감동 이야기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책을 펴내며...

다시 찾은 **이상** 다시 찾은 **웃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민에게도 출발과 과정에서의 균등한
기회제공이 보장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고충처리, 부패방지 그리고 행정심판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 2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안타
깝고 억울한 사연을 풀어드리고 공정사회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
가기 위해 지난 3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작년 한 해도 6만 5천여 건의 사연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조
서관들은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20
년간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충으로 남아있던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현장에서 조정하여 해결하였고, 인천 도화지
구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던 독거노인 및 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
에 대한 종합적인 이주대책을 관계기관과의 오랜 고민 끝에 마련했
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 생애전환기 건
강진단 확대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 소관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
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물론 위원회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해결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찾은 국민께서 해 주시는 “그래도 권익위가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한 마디 격려 말씀에 축 처진 우리 조사관들의 어깨에는 다시금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 책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조사관들이 겪었던 일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화들을 엮은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위원회 조사관들의 열정과 활약상도 담겨있습니다.

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기관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그나마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위원회 직원뿐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입장과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권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회를 찾은 모든 분들께서 다시 평온한 일상과 행복한 웃음을 되찾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1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김영란

CONTENTS

02_ 책을 펴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06_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경찰민원과 하 왕 수

14_ 42년 만에 밝혀진 의문의 죽음

국방보훈민원과 서 상 원

22_ 어느 농부의 새로운 시작

교통도로민원과 배 중 배

29_ 하늘이가 되찾은 학교생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 덕 양

36_ 구급(救急)이 시급한 구급차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오 정 택

44_ 할머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교통도로민원과 양 용 석

50_ 남몰래 받는 우울증 치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신 동 택

58_ 개인회생 따로, 국세체납 따로

재정세무민원과 지 영 립

64_ 방과후학교 100% 즐기기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김 미 숙



다시찾은 일상

다시찾은 웃음

- 71_ 43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한(恨)을 풀었어요.
국방보훈민원과 문 무 철
- 80_ 효행은 영원한 아름다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배 영 일
- 86_ 민원 해결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교통도로민원과 김 영 돈
- 98_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요!
운영지원과 황 유 상
- 105_ 눈 속에 고인 눈물
110콜센터 윤 정 희
- 111_ 영농손실비를 보상해 줘요.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김 영 일
- 116_ 딸아이와 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주택건축민원과 이 재 성
- 123_ 도시가스 요금을 낼 길이 없어요.
110콜센터 한 미 화
- 128_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꿈
도시수자원민원과 임 병 록
- 135_ 대불산업단지 내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보훈민원과 이 효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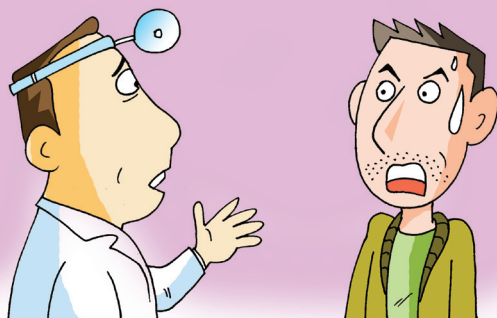
다시 찾은 일상, 다시 찾은 웃음

경찰민원과 하 왕 수

2003년 6월 3일 아침. 여느 때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난 권 씨는 평소와는 다른 기분을 느꼈다. 다른 날과는 달리 속이 매스껍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밤 마신 술 때문이려니 하고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일이 일어난 건 그날 오전, 치과를 찾았을 때였다. 보철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매스꺼움이 심해지면서 건디기가 힘들었다.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권 씨는 진료대에서 내려와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곧장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뇌경색’이라는 청천벽력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 다행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싶었다. 하지만 위기는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았다. 밤새 여러 번의 통증이 찾아왔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 때문에

뇌경색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 권 씨는 보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부축을 받으며 퇴원을 했다.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절룩거리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를 여러 차례 걸으며 걷기운동을 하고 헬스클럽에도 나갔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지팡이를 짚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밤이 주고 간 후유증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 권 씨에게 2007년 어느 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에게 느닷없이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날아온 것이다. 제1종과 제2종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시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가 신청한 산재보험의 내용이 경찰청으로 통보되면서 권 씨 역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된 것이다.

당시 그에게 수시적성검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뇌경색이 일어난 4개월 후부터는 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걷는 것보다는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했다.

권 씨는 기왕이면 제대로 검사를 받자는 생각에 보조기구가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체장애인 운동능력평가까지 신청했다. 뇌경색 이후 장애3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다. 운동능력평가를 합격한 후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수입인지를 준비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수시적성검사 결과는 황당했다. ‘수시 관찰’ 이라는 것이다. 합격할 때까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수시적성검사 담당에게 ‘수시 관찰’ 판정의 이유를 묻자 ‘알 수 없다’ 는 대답만 돌아왔다.

2008년에도 그 일은 반복되었다. 의사의 진단서와 사진, 수입인지를 준비해 수시적성검사에 다시 임했지만 결과는 또 ‘수시 관찰’ 이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면허시험장을 옮기고, 담당자에게 운전가능 여부를 재확인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더했지만 다시 수시적성검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비용이 들어가는 진단서를 매년 첨부하고, 시간을 내서 검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자 권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계속 ‘수시관찰’ 로 판정되는 것에 항의했고, 필요하다면 면허시험장에서 지정

한 의사에게 신체검사를 받겠다는 의견까지 개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수사를 받는 입장도 아닌데 웬말인가 했지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성의껏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작년과 같았다. 억울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청 민원실의 어쩔 수 없다는 대답에 또 한 번 좌절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었고, 모두가 이런 처분을 받는 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결심이었다.

권 씨의 민원을 담당하게 되어 자세한 사연을 들은 나는 처음엔 고개를 가웃했다. 민원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수



시적성검사 판정은 경찰에서도 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었다. 이번 일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내린 판정에 대한 불공정함을 호소하는 문제인 만큼, 재량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물리칠 수는 없었다. 우선 법령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리고 운영사항에 관련된 지침을 조사하다가 실마리를 찾았다. ‘수시관찰’이라는 판정은 법령과 지침상에 없는 것이었다. 수시적성검사에서 합격, 불합격만을 판단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위법’이라는 사실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권 씨가 후천적 신체장애를 갖게 되긴 했지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신체전문가(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3년 동안 계속 수시관찰로 판정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세부지침상 교통전문가, 신체전문가로 위원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편의상 행정경

찰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던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작년 6월 시정권고를 하게 되었다. 민원인에 대한 재검사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로 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7월에

는 권 씨가 직접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출석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판정은 ‘합격’이었다. 그제야 권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서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답을 찾을 때가 많다. 또한 법이나 제도, 절차를 모르고 억울함만 안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다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민원인을 처음 만나면 거의 대부분 묵묵히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듣는다. 많은 민원인들은 그저 이야기만 들어줬을 뿐인데도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권 씨 역시 나에게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는 말을 자주 했다. 자칭 ‘급한 성격의 소유자’ 인 권 씨는 억울한 마음에 털어 놓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때로는 반대되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는 나의 태도에 화가 누그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국가기관에 가서 일을 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권익위가 있어야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 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에서 잘못 처분한 일을 바로잡아주는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역시 고개가 끄덕여졌다. 국민들에겐 ‘해결의 창구’ 가 필요하다. 물론 그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경찰민원과는 가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의 ‘처분’ 이 있어야 그에 대한 ‘민원’ 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권익위에 민원을 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소, 고발, 진정 건을 경찰민원과로 들고 오는 경우나 경찰서에 가야 할 사건을 들고 찾

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인을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쉽지만
은 않지만 권익위를 ‘민원해결의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민원인의 편에서 이해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
실을 세세히 설명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사관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를 찾은 국민이 그들의 평온한 일상,
행복한 웃음을 되찾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42년 만에 밝혀진 의문의 죽음

국방보훈민원과 서 상 원

“형님…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동생의 조시(弔詩)는 결국 위패 앞에 무릎 꿇은 다른 동생들의 통곡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누구나 삶 속에서 가족의 죽음을 만나지만, 모두가 이처럼 형제의 죽음에 목놓아 우는 것은 아니다. 2010년 6월 3일. 국립대전현충원 위패 봉안실에서 울부짖는 이들 형제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9년 3월 어느 날. 사무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다소곳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충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다.

“1968년 1.21사태* 이후 시작된 예비군 훈련 중 형님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1970년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건장한 청년들이 찾아와 ‘당신 같은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이라며 겁을 줘 더 이상 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사망 사건의 원인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무엇이 그리 죄송하다는 것인지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말을 이어가는 민원인을 보며, 힘들게 살아온 그의 과거가 보이는 듯했다. 가슴이 아팠다.



사망자의 이름은 최○○. 분명 국군광주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임에도 그의 군번으로는 아무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하는 수 없이 최○○라는 이름으로 군 복무한 사람들의 기록을 모두 확인해 보았다. 결국 한 달 만에 군번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사망자의 병상 일지를 찾을 수 있었다.

* 1.21사태 : 일명 김신조 사건.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경찰국 소속의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

그런데 다음 문제는 병상일지에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원인이 없다니…. 당시 병상일지를 작성한 군의관을 어렵사리 수소문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다. 하는 수 없이 ‘대한의사협회’에 사망자의 병상일지를 보내 자문을 의뢰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보내온 답변은 놀라웠다.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검사 수치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장(臟)이 파열된 후 급성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군의관은 당시 분위기상 사망원인을 직접 기재할 수 없었지만 검사 수치를 남겨놓음으로써 자신의 몫을 다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조사관들의 몫이었다. 사망자의 장파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당시 소속부대 간부들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본적지를 통해 찾아야만 했기에 1주일에 한 명 찾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두 달여,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찾기와 연락요청 공문 보내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건을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여기를 좀 땡겨갔으면 하는데.”

한달음에 달려간 광주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내가 그때 예비군 훈련시키는 조교였는데 말이며, 그 사람 맞아죽었어. 김신조 넘어오고 처음 훈련 하던 때라 하도 뒤숭숭하던 때라서. 그러니까 교관 중에 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예비군 복부를 냅다 발로 차버렸어. 그런데 꼬꾸라져서는



안 일어나는 거여. 그 길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죽어버렸어.”

광주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중요한 증언이었지만 한 명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다. 당시 훈련 명부가 사라져 누가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누군가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야만 했다.

고심 끝에 우리 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망자의 고향인 전남 구례로 내려갔다. 당시에는 같은 지역 출신들이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기에 전담팀원 4명은 전역명령서를 들고 3박 4일 동안 구례 지역 마을회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사건을 설명하고 목격자를 찾았다.

비록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훈련 일자, 대상, 훈련 방식 및 분위기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 모습을 본 구례군청 공무원은 반상회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렇게 목격자를 찾아 전국을 다니던 중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한번은 당시 행정업무를 총괄한 장교를 찾아 전남 해남에 갔다.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볼 때, 분명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다가 집 뒷문으로 도망을 쳤다. 혼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집 근처에서 밤을 새며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번은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을 찾았는데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였다. 그런데 정작 다음 주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아보니 며칠 사이에 그 분의 지병이었던 ‘간암’이 악화되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였다. 민원이 접수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아침, 동두천에서 개인택시영업을 하신다는 분으로부터 ‘현장을 목격했다’ 며 연락이 왔다.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모른다고 할 지 몰라 전화를 받자마자 동두천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때 예비군을 교육하는 교관이었어요. 발로 찬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교관이었고.

그 사고는 바로 내 앞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라는 교관이 예비군 군기를 잡는다고 한 명



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 예비군이 쭈뼛거리며 나오니까 갑자기 발로 배를 찼는데 맞은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웅성거리고 심각해지니까 병원으로 데리고 갔지만 다음 날 죽었어요. 그런데 당시 가해자가 사단장과 친구였어요. 6.25 때 북파공작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더군요. 그러다보니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은폐되었지요.”

이들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일까? 과장님과 우리 조사관들은 현장 목격자들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부대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남아 있던 당시 현장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정리한 후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육군본부에 권고하였고 2010년 6월 3일, 드디어 사망자의 위패는 42년 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되었다. 유족들은 ‘몇 해 전 사망하신 어머니의 평생소원이 이루어졌다’며 안도하면서도 어머님 생전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다들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믿고 맡겨주신 민원인, 자신의 담당 민원이 아님에도 오랜 기간 같이 출장을 다니며 도와준 동료 조사관들,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도망가

고 싶을 때 냉철한 지적으로 보완해주신 우리 과장님. 이분들의 믿음과 끈기, 열정과 도움이 있었기에 42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참고로 가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자살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매일같이 접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정도를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농부의 새로운 시작

교통도로민원과 배 중 배

평생을 오직 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며 그 수확으로 큰아들과 딸들을 기르며 살아온 한 농부가 있었다. 이제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순조롭게 노년이 흘러가리라 생각하며 사는 나날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생 일궈온 농지 대부분과 과수원의 60% 가량이 도로 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다. 보상을 받기는 했으나 자식 같은 농지가 갈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런데 때마침 큰아들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9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찾아왔다. 처음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화를 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보상받은 돈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자식의 빚을 갚고 나니 손에 권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참담했다. 80평생을 농사만 지어왔고 오갈 곳 없는 사람까지 보살피며 성실히 살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털터리 빚더미뿐이었다. 아들의 빚을 갚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두 노부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아내는 자리에 누운 지 한참이었다. 이미 도로 공사 때문에 농지와 과수원이 편입된다고 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나날이 눈물만 쌓여가고 있던 터에, 아들 일까지 겹치고 나니 자리에서 일어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다른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직 미혼인 두 딸들이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줘야 할 텐데 가지고 있던 과수원마저 도로로 편입되고 보상비는 이미 큰아들의 빚을 청산하느라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으니 앞날이 막막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아내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궁여지책으로 떠올린 생각이 도로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라도 보상해 주면 당장 인근 마을에 전세라도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얼추 계산해보니 약 3천만 원 남짓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방청에 잔여지를 매수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건 잔여지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한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암담한 하루하루를 보내
고 있는 그에게 이웃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곳에 한번 가서 도와
달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귀뜸을 해주었다. 그는 지푸

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간 겪어온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
지 미루어 짐작이 되었다.

“제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조금 있
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에서는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잔여지를 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살고 있던 집도 농지와 과수원과 함께 편입되어
노부부가 갈 곳이 없습니다. 잔여지를 매수해주면 그 돈으로나마 전세
자금을 쓰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네~ 도면을 한번 볼까요?”

도면에 그려진 잔여지는 사다리꼴과 비슷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면적도 1,400㎡에 가까운 넓이였다. 이 상태라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이었다.

“음… 이 정도면 꽤 넓은 면적인데 ○○지방청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사관님! 저의 사정은 절박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가능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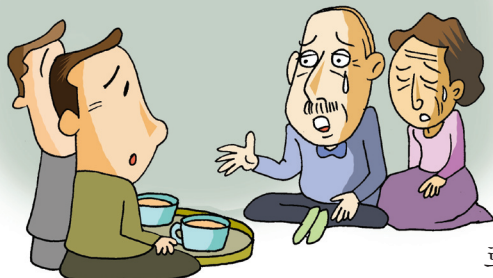
“네. 고맙습니다. 꼭 우리 노부부를 좀 도와주세요.”



꼭 좀 도와달라며 연방 인사를 하는 민원인을 배웅하면서 머릿속은 이미 해결방법을 찾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지방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면밀히 검토해보았다. 단순히 도면으로만 보면서 판단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도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넓은 농지와 주택은 물론 과수원까지도 출입에 전혀 지장 없이 관리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민원인이 살던 주택이 편입됨은 물론이고, 기존의 과수원으로 통하는 길은 완전히 차단

되었는데 그 대책은 전혀 세워주지도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처사였다.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불편함과 고통을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함께 현장을 살펴본 ○○지방청 담당자 역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였다. 현장을 둘러본 뒤 잠시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부인이 아픈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직접 길러 짜낸 것이라며 배즙 한 잔씩을 내어주었다. 극구 사양하였으나 손님 접대를 하신다고 주시는 것을 너무 거절할 수만은 없어 받아든 마음이 불편하였다.



“두 분께서는 계속
농사를 지으셨으면
문제없이 차근차근
빛도 갓고 잘 살아갈
수 있으셨을 텐데 도
로 공사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의 종전 토지의 목적과 진입로 등을 마지막으로 꼼꼼히 살피고 막 돌아오려는데 민원인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평소에 나쁜 짓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은 벽돌 건물은 오갈 곳 없는 젊은 부부들이 거처하던 곳입니다. 내가 직접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 돈도 받지 않고, 전기까지 끌어다가 연결해주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월세라도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어나갔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200만 원 가량이 넘게 들은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건축물을 가리키는 그의 순박한 두 눈엔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보고 있던 ○○지방청 담당자도 민원인의 사정이 안타까웠는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민원인의 요청대로 잔여지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의결이 되었고, ○○지방청 역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노부부의 오랜 마음고생이 해소가 된 것이다.

그러고는 한 달여 시간이 흘렀을까. 민원 처리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노부부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예전의 큰 농지를 갖고 있을 때에 비하면 초라할지도 모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처음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 소박하지만 작은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마음이 한동안 먹먹했다. 이런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 아닐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보람이 아닐까. 내 앞에 쌓인 일들을 통해 좀더 묵직한 보람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머릿속이 저절로 분주해진다.



하늘이가 되찾은 학교생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정 덕 양

얼마 전, 아이의 입학 문제로 생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우리 나이로 일곱 살인 제 딸 하늘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조기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을 치른 후, 신바람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하늘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얻은 모든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3월 중순경 어느 날, 학교로부터 우리 아이의 입학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학부모가 아동취학명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
이었습니다. 입학한 이후
로 결석 한 번 없이 학
교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던 아이가 학생명부
에도 없는 학생이라니.....

학교, 교육청, 도교육청 이하 담당자들의 입장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면사무소를 찾아가자, 담당자를 통해 지난 2009년에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기입학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나 유치원을 통해서도 입학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청기한이 지나 조기입학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었다더라면 무리하게 제 아이의 입학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조차 2008년 8월부로 바뀌게 된 새 법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시 유치원생으로 되돌아가게 될 경우 하늘이는 그곳에서 수치심을 느낄 것이고, 설사 학교에서 우리 하늘이를 청강생으로 1년 동안 학교를 다닌 뒤 재입학 시켜준다 할 지라도 학습태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너무도 자명해보였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교육을 담

당하고 교육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이니 이 정도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해주실 거라 믿었던 부모의 마음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찾게 되었고 담당이신 정 조사관님은 교육청 담당자, 하늘이 담임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과 직접 통화하시며 아이의 입학 문제가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 온 짧은 공문,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울음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답답한 심정을 너무도 시원스럽게 짚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권익위에서 보내주신 정성스런 한 통의 서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측에서도 우리 하늘이의 입학을 허가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늘이는 4월 12일자로 초등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학적부에도 그 이름이 등재되어 정식 학생으로서 활기찬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이(가명)의 이야기를 접한 것은 작년 3월 말이었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해 새 친구들을 사귀고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해 들떠 있는 하늘이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연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나에게도 안타깝게 들렸다.

하늘이는 3월 2일 전남 ○○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섬마을 분교에서 입학식을 거쳐 반 배정을 받고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육청으로부터 ‘입학 무효’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이유인즉, 입학 직전 연도에 작성되는 ‘취학아동명부’에 하늘이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따라 201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학아

동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2004년 7월생인 하늘이의 경우에는 조기 입학 신청을 해야만 취학아동명부에 등재가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2008년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교육청과 학교에 이것을 고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늘이의 입학은 인정될 수 없었다.

“마흔네 살에 얻게 된 우리 하늘이는 학교 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하늘이 엄마 정○○씨는 아이에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이의 실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2년간 유치원을 다닌 하늘이는 학교에 가기만을 기다리다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매일매일 행복한 웃음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입학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로 교육청으로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희망을 준 곳은 없었다.



사연을 들은 나는 관할 교육청 관계자, 분교장 등과 통화를 시도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하늘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교육청에서는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는 하지만 만약 고지를 받았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굳이 조기입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역적 특성상 워낙 학생 수가 적은 분교이기 때문에 고지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늘이의 입학을 무효화한다면 아이에게 상처가 클 것이 분명했다.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위원회의 구제방법 중 생각 끝에 내가 선택한 것은 ‘합의권고’였다. 해당 교육청만 수용을 해준다면 빠른 조치가 가능해 하늘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이의 부모님께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교육청에 합의를 권고했다. 해당 기관에서도 다행히 이를 수용해 바로 하늘이를 취학아동명부에 올리고 입학조



치를 하게 되었고 하늘이는 다시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민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관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민원 당사자 사이의 일방적 주장이 있을 때나, 이해관계자 간에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무엇보다 민원인의 답답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작은 고충이라도 무엇이 최선인지를 살펴 내 일처럼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이 아닐까? 하늘이 엄마의 편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구급(救急)이 시급한 구급차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오 정 택

“4년 공들여 쌍둥이 낳은 산모, 구급차 고장나 숨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관에 배달된 신문을 펼쳐 보았다. 눈을 비비며 무심히 넘기던 조간신문에서 사회면에 난 박스기사가 눈에 확 띄었다.

“어, 이건 뭐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가슴이 짹 막혔다. 잠이 달아났다.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이 응급실로 옮겨지는 도중에 구급차 고장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7월 결혼한 김모(36) 씨는 지난해 4월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

를 임신했다. 출산을 앞둔 지난달 21일 서울 강서구 M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도중 김 씨의 혈소판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다. 그는 곧 입원을 했고, 다음날 오전 8시50분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김 씨는 출산 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산소포화도가 83%로 떨어졌다. 주치의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으로 김 씨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병원 구급차 안에 있는 산소호흡기가 얼어 작동하지 않았다.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던 김 씨를 산소호흡기 없이 옮길 수는 없었다. 뜨거운 물로 호흡기를 녹이는 데 10~15분이 걸렸다. 김 씨와 남편 계모(38)씨, 주치의 등 6명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출발한 건 오후 1시 25분. 그러나 10분도 채 가지 않아 이번에는 구급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렸다. 계 씨는 “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안에 있던 의료장치도 작동됐다 멈췄다를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오후 1시 42분, 주치의는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출동한 119대원들은 일산 병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인근에 있는 E병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김 씨는 오후 2시10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2시간 여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오후 4시 5분 숨졌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사를 접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주일



뒤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었던 나로서는 충격이 더 컸다. 산모의 죽음 앞에서 그 가족들이 느낄 슬픔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

다. 당장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난다면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국민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그 보호자나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응급환자 이송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요 관리 감독이 허술하면 사회적으로 이를 환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당장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을 제목으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흔히들 응급환자 이송은 일반적으로 119구급대를 먼저 떠올린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 응급환자 이송은 공적(Public) 이송과 민간(Private) 이송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9구급대는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공적이송 체계이고 응급환자 이송료는 무료이다. 대신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의료 기관까지만 이송을 전담한다. 119구급대 외에 병의원 구급차,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비영리 법인인 사회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등은 민간 이송이다. 병원과 병원, 병원에서 집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민간 이송 구급차를 이용하고 정해진 법정 이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부속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장에 직접 나가 민간 이송을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 관할 감독 기관 공무원, 응급 구조사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현장

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던 산모 사망 사건의 담당 형사였다. 신문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구급차 고장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을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권익위에서 응급환자 이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데 그 사건 구급차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멀쩡한 차가 길 중간에 서게 된 걸까요? 오래된 차였나요? 아니면 정기검사를 안 받았었나요?”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인 삼발이 디스크가 끊어져 차가 멈춘 거였습니다. 차는 10년 조금 넘는 차였고, 알아보니 사건 일어나기 열흘 전쯤 정기검사를 받아 종합판정 ‘적합’ 을 받았더군요.”

“그럼 정기점검을 받더라도 오래된 구급차는 언제든지 고장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노후 구급차는 운행을 금지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이런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노후 구급차의 운영 현황은 어떨까. 수도권 민간 이송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보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80개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현황자료를 받아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조사대상의 14.9%나 됐고, 12만km 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대상의 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

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다. 이런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환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조사를 계속 해보니 민간 이송 구급차의 문제는 차량의 노후화만이 아니었다.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구급차 안에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장비 및 차량의 소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로 운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송 요금도 불투명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송료는 1995년 법정 기준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기름값,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내원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의 사정으로 상급병원에 이송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현장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들은 문제를 감추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발 이번 기회에 민간 이송의 제반 문제들이 낱알이 드러나서 개선



되기를 바랐다.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일념과 사명감으로 이송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지만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법제도와 이에 편승하여 기승을 부리는 일부 부실 이송업자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민간 구급차 전체가 매도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였다.

그간의 언론보도나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민간 구급차 문제는 주기적으로 언론에 못매를 맞는 사안이었다. 여론의 이목을 끌었다가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면 예전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식이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도 반짝 이목만 끌고 실제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 역시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직제개편으로 응급의료과가 신설되었다. 예전에 한 계(係)에서 담당하던 응급의료 업무가 과(科)체제로 격상된 것이다. 제도개선 방안 사전협의차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날은 응급의료과가 신설된 지 불과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은 새로 발족된 과에서 맡게 될 업무에 열의를 보이고 있었고, 그런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다. 업무협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새로 생긴 과에 그동안의 민간 구급차 문제를 잔뜩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제대로 고쳐지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다.

미국에서는 911이 출동하면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 물이 갈라지듯 길을 비켜준다고 한다. 저 차 안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급차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정도로 ‘구급차 길 터주기’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민간 구급차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부정적 이미지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부디 이번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응급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명과 안전도 보장이 되고 민간 구급차의 낮은 신뢰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할머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교통도로민원과 양 용 석



“여기가 뭐 하는 데여? 어? 내 돈 58억 내놓으란 말이여, 이 나쁜 놈들아!”

지난 7월. 연세는 84~85세, 구부정한 허리에 서 있기도 힘드신지 몸을 약간씩 떠시는 할머니께서 위원회를 찾아오셨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는 돈 찾아드리는 데가 아니구요, 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예요.”

“뭐이라고? 야 이놈들아, 내 돈 내놔!”

“.....”

도대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고 본인 하실 말씀만 계속 하시니 그

저 듣고 있을 수밖에…。 할머니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한참 듣다보니 말씀의 요지는 대강 이랬다.

예전에 서울역 부근에서 떡장수를 할 때 검은 안경을 쓴 사람들이 와서 본인을 간첩으로 몰아 괴롭혔고, 이후 대통령께서 보상금으로 58억 원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돈을 왜 아직까지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으시고는 그 ‘보상금’을 왜 안 주느냐며 찾아오신 것 같았다. 그 ‘보상금’과 이 ‘보상금’은 다른 거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내 돈 내 놓으라고만 하셨다. 자세한 사정이나 알아보자고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이 누구였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여쭙보면, 귀에서 보청기를 꺼내신다.



“이~잉? 뭐이라고? 안 들려!!”

“할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여쭙보는 건 대답 안 하시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만 하실 거면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하실 말씀 다 하셨는지 불쑥 일어나서 나가시던 할머니는 부패신고센터 간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울역 쪽으로 걸어가신다. 할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오후 2시만 되면 부패신고센터 유리문을 슬그머니 밀고 들어오셨다.

“야 이놈들아~ 내 돈 내봐!”

“할머니, 또 오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가족들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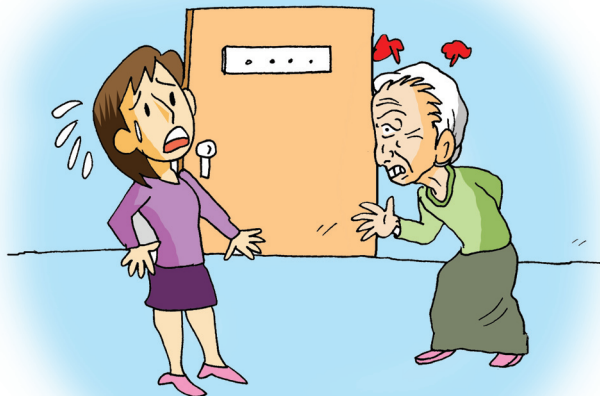
몇 번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보니 할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되었다. 예전에 ○○동에 사셨고 5남매를 두셨는데 큰아들은 교장선생님이고, 딸은 공부를 잘해서 ‘박사님’이며, 할머니께서는 지금 ○○역 근처에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는 7~8년 전에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할머니의 작전이 바뀌었다. 제일 만만해 보이는 한 여직원을 쫓아다니며 다그치기 시작하신 것이다.

“보상금 얼마 집어 넣었어? 언능 계좌번호 불러봐~”

“할머니, 저 몰라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보상금 받으면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여. 낯짝이 있는



사람이랑게? 어여 말해 봐. 잉?”

어르고 뺨 치는 솜씨가 대단하시다.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바로 소리가 높아진다. 날이 가도 달리 해답은 없고…. 여직원이 업무상 자리를 비운 날이면, 왜 도망을 다니느냐며 난리를 치신다. 매일같이 그렇게 한 시간여 동안 소동을 벌이시고는, 서울역 방향으로 ‘퇴청’을 하신다.

권익위원회 1층에서는 상담센터 직원들뿐 아니라,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도 다 아는 ‘내 돈 내놔 할머니’. 이제는 거꾸로 어찌다 안 오시는 날은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지, 돌봐드릴 사람은 있는 건지 슬슬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던 11월 중순의 어느 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직원들이 두툽한 외투를 입고 출근했던 그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께서 신고센터에 ‘출근’을 하셨다.

“까~악!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매일 할머니께 혼나던 여직원이 오히려 성화다. 몸 녹이시라고 따듯한 녹차를 타 드리며, 온풍기를 켜느라 부산하다.

직원들 간에 논의가 벌어졌다. 이 추위에 고령의 노파가 서울역에

서 위원회까지 걸어오시는 것

도 문제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빙판길에 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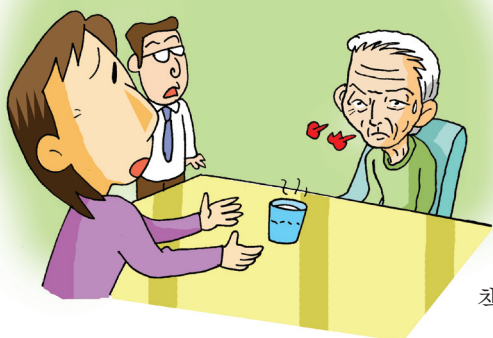
이라도 하시면 정말로 큰

일이었다.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과 연락을 해서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청과 ○○구청에 할머니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는 큰아들의 연락처를 찾았다. 연락을 받은 큰아들은 자녀들이 여럿 있음에도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형제

들과 상의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노라고 약속했다. 큰아들의 약속대로 가족들이 잘 돌봐드리는지 그 뒤로 할머니의 방문은 없었지만, 한 동안 오후 2시 무렵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입문을 바라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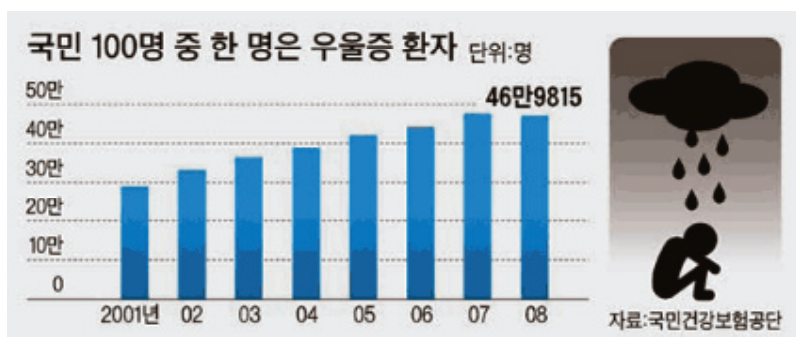
“할머니, 편찮으셔서 못 오시는 건 아니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할머니, 이제는 오지 마세요!”



남몰래 받는 **우울증** 치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신 동 택

이은주, 정다빈, 최진실, 최진영 ... 연이은 연예인들의 자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가. 이들의 자살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우울증이다. 이들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꽃다운 생애를 마감하여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이런 우울증은 비단 유명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 반적인 질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일반 성인의 13% 이상은 가벼운 정신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중 우울증의 평생 유병율은 15%, 특히 여성들은 25% 정도에 이른다. 내가 아는 직원 A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중압감으로 지난해 20여 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벌써 1년째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 누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더 이상 우울증이 내게서 먼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정도로 우울증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 것일까. 국민신문고에도 우울증과 관련된 국민 제안들이 들어왔다.

<사례 1> 친정 엄마 이름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슬픔

저는 서울 ○○구에 살고 있는 35세 주부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던 저는 10여 년 전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아홉 살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아들, 그러나 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저는 왠지 모를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었고, 불면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우울증을 앓게 된 것



인데 대개의 경우처럼 잠시 스쳐가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 아이는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잘 자라주었고, 저는 병원에 다시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많았고,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며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의 불안증세가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저를 데리고 서울시 ○○병원 정신과를 찾았고, 면담 결과 우울증이 심하다는 진단이 내려져 항정신 약물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2주일 동안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는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과 입원 경력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원을 거부하고 외래 치료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병원에 진료기록이 남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본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인을 통해 다른 정신과 의원을 찾아가 사정 끝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었으며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2> 포기할 수 없었던 간호조무사의 꿈

국민이의 코를 닦아주고, 칭얼대는 권익이를 한번 꼬옥 안아주고, 포크를 든 채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청렴이에게 다가가 간식 먹는 일을 도와주고.... 저는 지금 지방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 일을 할 수 없을 까봐 노심초사하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07년 저는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돌보는 주간보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할머니들을 돌보고 매일매일 혈압과 당뇨를 체크하며 약을 챙겨드리는 등 간호보조 일을 했습니다. 당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출산휴가를 간 간호사가 있어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도 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은 제가 간호 일을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꼭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계속 자신들을 간호해달라고 손을 잡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겐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때 5개월 동안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한창 예민하던 그 시절을 잘 이겨낸 제 자신에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이 일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간호조무사가 되고픈 소박한 희망을 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주간보호센터의 간호과장님과 상담을 하던 중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앓은 지 20여 년이 지났고 그 때 약을 먹고 우울증이 다 나았으며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 잠시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좌절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 먼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지만 불행히도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결국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이 길에 대한 저의 소망이 너무 간절했기에 저는 또 다른 방도를 찾기 시작했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본 제도개선담당관실 직원은 모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는데 너무나 할 것 없이 공감 했고, 나는 바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병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하나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우울증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우울증은 수개월에서 2년 정도만 적절하게 병원을 다니면 환자의
80% 이상이 치료가 가능하다. 병원에서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라
할 만큼 일반적인 질환으로 보고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정신과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진료 기록에는 정신질환을 가리키는 국제질
병분류 기호인 F코드가 남는다. 단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
유로 정신질환자 기록이 남는 셈이다. 기록은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는
다. 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간호조무사 같은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받
는다. 또한 언제 어디서 이 기록으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거꾸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다른 질환처럼 맘 편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이름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울증 치료 이후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각종 민간보험에는 가입조차 어렵다. 앞서 말한 동료 직원 역시 우울증 치료 후 보장성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가정에 많은 부담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중고, 삼중고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자격증 제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개념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 하고, ‘정신보건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 하여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 퇴소 후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앞으로는 우울증같이 가벼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종 면허 취득과 사업장 인허가·영업신고 등이 제한되었던 200만 명 이상의 경증 정신질환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우울증은 이제 더 이상 감추거나 몰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미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병 자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방치하여 개인의 불행이 극단으로까지 이르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개인회생 따로, 국세체납 따로

재정세무민원과 지 영 립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막대한 아픔과 그늘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90년대 말의 벤처 붐, 인터넷 붐으로 많은 사람들이 벤처시장과 전자거래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중에 지금껏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개인

이나 기업은 얼마나 될까. 금융 기관은 또 어떤가.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체와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가면 금융 기관은 부실 자산을 떠안게 된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해주던 금

용기관으로서 20억 가치였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담은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계 부채율의 악순환은 더 심각하다. 매년 증가추세인 가계 부채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이미 향후 몇 년치 소비를 앞당겨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속출할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의 현실은 더욱더 암울하다. 이런 개인 채무자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나라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법정관리(개인회생)제도를 출범시켰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모든 법절차가 그러하듯이 개인회생절차 역시 단점이 없을 수 없다.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다. 또한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인 한 분이 기막힌 사연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신청인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체납과 사업을 위해 빌린 돈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8천여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를 받았다.

값아도 값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 그리고 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무섭기만 한 국세체납 독촉장 등에 시달리며 악몽을 거듭해온 그로서는 그나마 회생절차를 통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제할 길이 열려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후 20개월 이상 꾸준히 변제해 체납세액 1천 9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5천 9백여만 원의 납입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로 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지를 받았다. 국세징수법이 정하고 있는 징수유예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기간 20개월을 포함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증가산금을 매월 신청인

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엄청나게 번거로운 절차들을 밟아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세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유예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언질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동안 기본생활비만을 남겨 놓고 열심히 부채를 갚아왔던 나날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심정이었다.

세무서에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국세체납액을 포함하여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징수유예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며, 체납세액에 대한 증가산금 부과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만 듣고 나와야 했다.

신청인은 체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았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하면서 법원은 세무서에 징수

유예에 대한 의견을 확
인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법은 회생계획
이나 이 법률에 의하
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
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
고 있지 않은가?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채납하고 있는 세무 역시 다른 일반 회
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세무관서는 책상에만 앉아서 본인들에게 접수되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
없이 커다란 짐을 하나 더 지운 것이다.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입법
취지, 관계법령 등의 조문 전체를 뒤적여 신청인의 주장에 논리적 토대
를 세워 세무관서에 증가산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시정권고 하였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회의 각 부분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아주 분주하다. 새로운 제도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양새로 태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한 제도가 추구하는 좋은 점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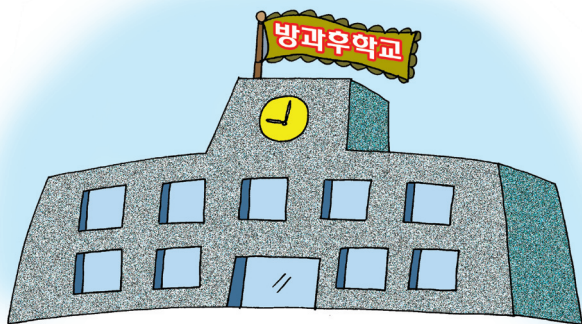
이번 경우는 다행히 우리의 시정권고로 해결이 되어 마음은 뿌듯하지만 이런 일들은 각 행정 관서에서 스스로 해결하여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없기를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한다.



방과후학교 100% 즐기기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김 미 숙

최근 들어 각 학교들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이나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특기적성 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학교정규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99.9%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에 들어온 국민제안 사례에서도 방과후학교 제도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다.

<사례> 방과후학교 3개월 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러니요.

저는 아들만 내리 셋을 키우는 아들 부잣집 안주인이자 억척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에 들어가고 급기야 막내아들 녀석마저 초등학교가 된 이후에는, 생활비의 3분의 2 이상을 애들한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개별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애들 학원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궁핍해지더군요.

그러던 중 「방과후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생인 막내아들네 학교에서는 미술 등 특기적성에서부터 수학경시반까지 강좌개수가 2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와 큰아들네 학교에서도 교과목마다 강좌가 수준별로 진행되고 있어서 잘만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알차게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싶더군요.

그러나 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강좌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지되어 온 날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각 강좌는 '기'별로 운영하고 한 '기'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 기별 수강료를 첫 달 5일까지 스쿨뱅킹으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특기 하나에 원어민 영어를 신청했으니 37만 원,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가 신청한 교과목 수강료가 30만 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아이 교과목 수강료 40만 원 등 얼추 계산해보니 5일까지 빠져나가야 할 금액이 한 달에 무려 107만 원이 나오더군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학교에 내는 돈은 카드결제나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욱이 각 월별도 아니고, 3개월분 321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처음엔 정말 당혹스럽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물며 학원도 월별로 수강료를 내고 카드결제도 해주는데, 왜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 담당 선생님께 전화해서 항의하니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학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급한 대로 돈을 만들어 애들 통장에 넣어놓고 보니, 벌써 또 걱정이 밀려들더군요. 3개월 후에 또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말입니다.



3개월치 수강료를 한 번에, 그것도 카드결제도 아니고 인터넷뱅킹으로 일시에 내야하다니....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여간 큰 부

담이 아닐 수 없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방과후학교」 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었다. 「방과후학교」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즉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수강료 납부와 관련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부조리가 다수 포착되었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작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선 방안 주요내용

- 방과후학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탁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교원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확대·배치
-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방식 개선
-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이 권고된 얼마 뒤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앞서의 국민제안을 냈던 학부모로부터 온 감사편지였다.



방과후학교를 100%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수강료 납부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그럼 그렇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나라에서 가만 놔두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간 잘 몰랐던 권익위원회라는 기관에 대하여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아이를 보내 본 학부모라면 누구나 느꼈을 이러한 불만과 부담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애 둔 죄로 그렇게 교육적 약자로 묻혀가나보다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야말로 우리 부모의 권익을 보호해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없는 살림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저희 같은 서민들이 이제는 방과후학교를 온전히 100%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민국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나 또한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이니 저 심정에 저절로 공감이 된다. 미리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아둔함을 반성하면서도 늦게나마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듯하여 내내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43년 만에 국가유공자가 되어 한(恨)을 풀었어요.

국방보훈민원과 문 무 철

“문 조사관님,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상담입니다. 상담센터로 내려 오세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상담 전화와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오후, 상담센터로부터 방문 상담이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내려가보니 자그마한 키에 거무스름한 얼굴, 노년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수수한 양복에 중절모를 쓰신 노신사분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기다리고 계셨다. 상담센터 책상 위에는 이 분이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 한 보따리의 서류 뭉치가 남루한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신사부는 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벗으시며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노신사부의 얼굴 곳곳에는 웬지 모를 병색이 완연하고 호흡도 불편하신 듯 연신 기침을 하신다. 나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 또한 힘겹게 느껴진다. 그 분은 서류 보따리를 가리키며 나에게 펼쳐봐 달라고 하신다.

“우와~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지난 43년간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주고받은 민원서류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지요.”

“예~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 이쯤에서 그만 접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좀 봐주세요.”



노신사분은 1966년 2월 포병 장교로 군 복무 중에 차량 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기셨고, 당시 갈비뼈 4개가 골절되어 폐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으셨다. 전역 당시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어서 전역 이후에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셨다는데, 나이가 들면서 호흡하기도 어렵고 몸의 여러 곳이 불편하여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노신사분이 가지고 오신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가지고 오신 서류들은 일자별, 기관별로 민원 내용과 그 회신문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노신사분의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는 서류들 속에는 그동안 노신사분의 고초도 함께 배어 있었다.

오래된 서류들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의무기록을 찾기 위한 민원서류들이었다. 정부 기록물이 전산화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병상일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 서류들은 노신사분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는데 지난 세월 노신사분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보고 있자니 저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군 복무 중에 입은 부상 부위가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기록이 필요하다. 부상 경위, 부상 부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 등은 유용한 자료다. 그런데 이 분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을 통해 본인의 병상일지는 찾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병상일지에는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기록만 적혀 있을 뿐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노신사분이 당시 포병 장교의 신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차량 사고가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인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후 노신사분은 그 차량 사고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함께 복무한 동료들을 수소문하고 육군 수사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당시 차량사고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당시 차량사고의 기록을 확인해주는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노신사분이 가지고 오신 서류들 속에서 당시 차량사고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차량사고 났을 때 혹시 다른 분은 안 계셨나요?”

“몇 명 함께 타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시 차량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주목했다. 당시 차량사고가 군 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당시 차량사

고로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순직자는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국립묘지 안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신사분이 차량사고를 당했다는 1966년 2월 〇일 강원도 〇〇지역에서 순직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문 조사관입니다. 혹시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1966년 2월 〇일 강원도 〇〇에서 순직하신 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우리는 초조하게 국립묘지 담당자의 확인 결과

를 기다렸다. 노신사분은 짧은 시간의 기다림이 몹시도 길게 느껴지셨는지 거둬 큰 한숨을 내쉬며 모자를 벗고 땀을 닦으신다. 드디어 국립묘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 있네요. 병장 어○○.

1966년 2월 ○일 강원도 ○
○에서 순직, 국립서울현충
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 병장을 알고 계시
냐고 여쭙보니 노신사분은 잠
시 머뭇거리다가 먼 과거의 기억 속

에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신다.

“아~ 맞아, 어○○ 기억납니다. 우리 부대원 중에 ‘어’ 씨가 한 명 있었는데 보기 드문 성씨를 가진 병사라서 기억이 나는군요. 같은 포병 부대원이었습니다. 아마 포반에 소속된 병사였던 것 같네요.”

나는 부랴부랴 육군본부 인사처리과, 기록정보관리단에 어○○ 병장의 매·화장 보고서 등 순직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어○○ 병장의 매·화장 보고서 등 그의 순직 처리를 위한 기록 속 어딘가에 당시 차량 사고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이 흘렀다. 육군본부로부터 어○○ 병장의 매·화장 보고서 사본이 도착했다. 보고서의 사망원인 란에는 ‘1966. 2. ○. 09:00경 보급품 수령차 2.5톤 차량에 편승하여 운행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강원 ○○ 북면 ○○리에서 차량사고 발생, 제5이동외과병원에 후송하였으나 두개골 골절로 순직함’ 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 병장은 노신사분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같은 날 함께 차량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노신사분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제5이동외과병원으로 함께 후송되었으나 사고 당일 순직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이었다. 당시 차량사고는 보급품 수령을 위해 군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중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난 사고로서 당시 차량사고가 군 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노신사분의 부상 부위가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을 발견하였고, 그 기록을 토대로 이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하였다. 국가유공자는 부상 부위에 대한 공상 인정 후, 그 공상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7급 이하의 상이 등급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노신사분의 부상 부위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이후 이 분은 공



상으로 인정받은 부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았고, 서울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 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상이 5급’에 해당되었다. 노신사분이 그동안 건강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셨는지를 다시금 생각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이 분은 바라던 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빨리 등록되어 좀 더 나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얼마 뒤 우리 위원회의 상담센터를 방문하신 노신사분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얼굴의 혈색도 많이 좋아지시고 예전처럼 기침도 하지 않으신다. 국비로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매월 백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이 나와 생활여건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신다.

“고맙습니다. 진작 권익위원회를 찾아왔어야 하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지난 43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恨)이 풀렸네요. 참 감사합니다.”

모든 민원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노신사

분의 민원은 당사자 본인의 기록은 아니지만, 고인이 된 어○○ 병장의 간접적인 기록으로 과거 속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노력해도 과거 잊혀진 진실을 밝히지 못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 훨씬 많다. 그렇다고 미리 체념할 것까지는 없다.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훨씬 많아도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느끼는 보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해결해주고, 때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맺힌 한까지 풀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번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조사관으로서의 벅찬 보람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내게 주어진 막중한 소임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신사분의 지난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좀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노력
보람
막중한 소임**



효행은 영원한 아름다움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배 영 일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의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인 그가 그렇게 극찬할 만큼 우리의 효행사상은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자산이자 정신문화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핵가족화 등 가족제도 변화와 동시에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의 효행문화가 후퇴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물론 효행이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와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으니 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꼬리를 물어 제도권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해준다면 사라져가는 효행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어졌고 그런 바람은 ‘효행문화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착수로까지 나아갔다.

처음으로 한 일은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우선 학술지, 인터넷, 신문 등 문헌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해본 뒤 효행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니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현행 효행장려법에서는 부모부양을 위한 부양비 지원, 부모부양 주거시설공급지원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눈에 띄었다.



우선 일부 지자체가 시행중인 효도수당제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해주는 등의 「효행문화진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효행문화진흥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효도수당제' 확대, 국민주택 우선 공급 가점 부여 등 부모 부양자 주거시설 공급 지원 추진
- 효행 표창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보조, 문화시설·공연 무료 이용, 취업교육 및 훈련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도덕·윤리 교과서'에 효행관련 내용 편성 강화, 효행체험활동제 도입 등 효행교육 내실화 추진



이 방안을 받아든 대부분의 유관기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제도개선까지 하느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효행까지 굳이 국가기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답은 분명하니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효행은 개인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입니다. 개인도 국민의 일부입니다. 개인의 권익은 곧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효행문화진흥 제도개선 방안」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았다.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던 민간단체 소속의 노교수 한 분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전통사상인 효행이 퇴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효행 전파와 실천을 위한 자리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로서 무거운 책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효행의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다고 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국민권익」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 소개되자 200여 분의 누리꾼들께서 다양한 댓글을 달아주셨다.

- 많은 이들에게 효에 대한 각성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내다보고 학생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백년대계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감동을 느낀 정책에 한결 기분이 좋아지네요^^
- 자식들을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이 정작 나이가 들어 소외받는 모습이 많은 듯하여 참 가슴 아픕니다. 제도적으로 조금이나마 효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 효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린 시절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더 훈훈하고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 좋은 정책이네요.
- 효행 우수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간다면 이에 대한 병폐도 생겨나겠지요. 제도 운영자들의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 효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직접 접하고 나니 감사한 마음은 물론이고 내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기도 했다. 댓글이 새로 달릴 때마다 제도개선 담당자로서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듯했다.

효행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나라와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인데 이렇듯 타의성이 강한 제도개선 권고라는 방식으로 다루어야만 하는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접한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을 지켜보고 있자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효행문화진흥 제도개선 방안」

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효행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나아가 사회 깊숙이 자리잡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효행문화

민원 해결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교통도로민원과 김 영 돈

장항선은 천안에서 갈려 예산·대천을 거친 후 장항에 이르는 단선 철도이다. 장항선의 웅천역과 주산역 사이에 철길을 따라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에는 철도 주변으로 가깝게는 20m, 멀게는 50m 정도에 주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개 한 마리가 나를 반긴다.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참으로 조용한 곳이다.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야산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풍광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시골 마을.

개 짖는 소리에 마을회관 앞에 모여 있던 동네 어르신 10여 분이 나를 바라본다. 모두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다. 검게 탄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흔적을 남기듯 꽤 많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모



두가 한결같이 따뜻한 눈빛과 잔잔한 미소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서 오세요. 이런 먼 촌구석까지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니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첫마디에 농촌사람의 순박함과 소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왔다. 이 마을에는 15가구에 40여 명이 살고 있으며 평균 나이는 70세 정도로,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고향을 지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뿐이었다. 조금은 지루해보일 정도로 단순한 농촌의 삶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먼 훗날 꿈꾸는 나의 삶이기도 했기에 그 느낌이 참 좋았다.

그들 중 가장 기쁘게 반겨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마을을 대표해서 국민신문고를 두드린 박 선생님이었다. 나는 박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마을과 인접한 철도 250m 구간을 우선 둘러보았다. 나를 반기던 어르신들 모두가 느린 걸음으로 내 뒤를 따르며 함께 했다. 그들의 발걸음과 얼굴에는 나에게 거는 믿음과 희망이 가득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분들 역시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미리 살펴보니 딱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을 둘러본 뒤 다시 마을회관에 모였다. 어르신들은 그동안 담아두었던 고충을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여객열차 32회, 화물열차 16회 정도가 매일 이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기계소음, 급속마찰음, 진동 등으로 마을이 들썩거린다고 했다. 게다가 늦은 밤 선로보수 작업이 있을 때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잠을 자는 것은 물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TV를 시청하는 것도 어렵다고 이구동성 하소연을 했다.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를 시작한지 10여 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미미

한 진동과 기계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어느새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마을회관이 뒤흔들리고 바닥은 들쭉거렸고 온몸은 심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 어르신들은 말씀을 멈추고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 역시 말을 해봤자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마을회관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고충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눈빛으로 말없이 외치고 있는 듯했다.

소리에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마을회관 문을 열고 철길을 바라보니, 무궁화 디젤열차가 뒤흔들리며 장항을 향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었다. 저 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자들에게는 이 마을이 무척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로 비칠 것이다. 역시 기차를 타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기차는 매력 넘치는 여행 수단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 안과 밖의 사람들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기차는 ‘지면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란한 기계덩어리’ 일 뿐이었다.

40여 분쯤 후에 또 한 대의 열차가 요동을 치고 지나쳐 갔다. 그리고 화물열차, 여객열차, 화물열차 차례로 20~40분 간격을 두고 열차가 마을회관을 한바탕 요동치게 하고 달아났다. 그때마다 느낀 철도 소음은 정신을 조금씩 조금씩 빼가는 듯했고, 열차가 떠나고도 한참이 지



난 뒤에야 가까스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볼 때와는 사뭇 다른 기분이었다.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일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철도소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어르신들 앞에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1982년도에 장항선이 이설되면서부터 이 마을은 수십 년을 기차소리와 함께 살아왔다. 처음에는 열차가 드문드문 운행돼 소음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관차의 동력도 강해지고, 운행하는 횟수도 증가하면서 진동과 소음은 점점 더 커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청각기관에 장애가 생겨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곳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이들이어서 오랫동안 철도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마치 의무감처럼 참으며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이 마을 가까이 전차대^{**}가 설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은 시행자인 ○○공사에 철도와 마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차대가 운영되면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는 전차대 구역만을 빙 둘러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존 철도변 방음벽은 ○○공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전차대와 마을사이에 철도가 놓여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살아가던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들의 민원을 받은 뒤 우리는 ○○공단에서

이 마을의 소음도를 측정한 자료를 받았다. 주간 68dB, 야간 57dB. 법에서 정한 철도 소음한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아울러 자료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철



^{**} 전차대 : 철도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장치

도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지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내후년까지 방음벽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이미 수십 군데라고 나와 있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 마을에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로 들렸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볼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설명을 하면 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 전차대에 설치한 방음벽을 마을과 철도사이에 설치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절로 들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

철도업무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보였다. ○○공사가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업무영역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서 ○○공단과 협의만 했었다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주민의 편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고보니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사실 나는 이 자리에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걸 설명하러 온 것이지 않은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법에서 정한 소음한도 기준 이하라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다고 차마 말

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함께 참석한 ○○공단 관계자는 옆에서 법령내용과 회사의 어려운 내부사정을 들어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공단 관계자에게 이 마을을 도와주자고 정중히 부탁했다. 안타깝지만 소음한도 이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 피해가 있기는 하나 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 그 피해를 느껴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를 쉽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단 관계자에게 소음한도가 문제라면 다시 한 번 소음도 측정을 해보자는 제의를 했다. 관계자도 마을 어르신들도 기꺼이 동의해 주었다. 마을회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이 마을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행이었다. 나 혼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어서. ○○공단 관계자도 함께 우리는 둘 다 같은 자리에서 이 마을의 철도 소음 피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고충을 나누다보니 어느덧 중천에 있던 해가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결국 소음도를 재측정하자는 것을 오늘 회의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마을은 소음한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라 측정 시간에 따라 얼마든지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에 마을을 떠나는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서 공공시설과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그 이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다시 무거워졌다. 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국가적·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보였다.

나는 열차 운영기관인 ○○공사의 협조를 얻어 열차가 가장 많이 운행하는 시간대를 조사했다. 통과하는 열차가 많아야 철도소음도 높아지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에서 비롯된 조사였다.

1차 현장조사 이후 두 달이 지났을까. 2010년 3월 ○○공단과 위원회가 공동으로 마을의 주간 소음도를 다시 측정했다. 그날따라 바람도 많이 불어 소음도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톡톡히 해주었다. 재측정 결과 69.3dB로, 법정 소음한도 기준에 0.7dB이 미달되는 수치였다.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 가슴 한 곳이 답답했다. 이제 법의 잣대를 대고 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다고 결실 없이 끝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공단과 박 선생님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집단갈등의 합리적 해결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다. 이 또한 여러 날
 을 두고 조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갔다.



다행히 장항선이 2012년에 2차 개량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소음한도에 매우 근접하고 있고 전차대가 설치되어 소음피해
 가 가중되고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장항선 개량사업에 방음벽 설치
 를 포함시키자는 제의를 당사자들에게 하게 되었다. ○○공단은 향후의
 일을 장담할 수 없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심사숙고를 해보겠
 다고 했다. 마을 대표자인 박 선생님께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
 는 여러 정황을 설명 드리고 ○○공단에서 2012년 장항선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방음벽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
 으시냐고 여쭙보았고, 박 선생님께서는 이를 승낙해주셨다.

2010년 5월 7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위 내용으로 당사자 간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다. 장장 6개월간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었다. 마을 어르신들과 ○○공단의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 당장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실 법도 한데 함께한 어르신들은 그 동안 고생했다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힘써달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으셨다. 나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시고 내일이 토요일이니 자고 내일 가라고 하셨다. 가슴이 너무 뭉클해졌다. 이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삶, 그 자체 그대로 마음 깊이 다가왔다. 이 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날의 내 마음이 죄송하기만 했다.

한없이 푸근했던 그 작은 마을, 마을회관에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 많은 사연들, 귀한 손님 오신다고 마을회관 국기계양대에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며 아침 일찍 읍내에 나가 태극기를 사오시던 박 선생님, 나 이 어린 나에게 수차례 인생교훈을 들려주시던 어르신…. 정말 이 마을과의 인연은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슴에 두고두고 남을 것 같다.

그들의 따스한 인정 때문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다른 사

람들이 마을을 떠난 뒤에도 어르신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담소를 나누었다. 마주하면 할수록 그들에게서는 나와 같은 30~40대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가진 삶이 느껴졌다. 모두들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3년 후쯤엔 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지 상상하니 지금도 얼굴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요!!

운영지원과 황 유 상

“건강진단을 왜 아직 안 받으셨어요?
해 바뀌기 전에 꼭 받으세요.”



2009년 12월
경이었다. 사무실 건
강보험업무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아직 받지 않아 온 연락이었다. 연초에 통지서를 받긴 했
으나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도부터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만 40세와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되는 만 66세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물론 이전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다양한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긴 했다. 그러나 검진 항목이 획일적이고 프로그램도 단편적인 데다가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부족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질병 예방과 조기검진이라는 건강검진의 본원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연령별 예방효과가 탁월한 ‘과학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혈액검사위주의 검진체계에서 벗어나 개인별 위험평가와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해가 지나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니 해가 바뀌기 전에 꼭 받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회사 가까운 곳의 건강검진센터 몇 곳에 예약

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문의를 하는 곳마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일 년 동안 잊고 지내다 해가 바뀌기 전에 다들 받으려고 해서, 연말에는 늘 예약이 폭증한다고 한다. 회사 부근에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고 회사 먼 곳까지 가는 시간은 도저히 낼 수가 없었다. 건강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쳐 안타깝긴 했지만 내가 미룬 탓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는 제도개선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로운 일을 하느라 자연스럽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건은 잊혀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마흔 넘어 늦둥이를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임신 때문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네요. 애를 낳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만 40세가 넘으면 못 받는다고 했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당신이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때요?”

아내는 보건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제도가 비용 부담 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개하곤 했다. 그런데 받고 싶어도 임신 때문에 못 받은 이웃 아주머니가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건강진단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득이한 사유로 만 40세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니 역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 242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규정을 천천히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먼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만 40세와 만 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 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이 ‘만 40세 또는 만 6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 40세 또는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 에 건강진단을 받는 것인지 모호했다. 아울러 임신이나 국외 장기 출장, 유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먼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제까지 실시해오던 대로 ‘만 40세 또는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검진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진단을 받
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하면 개선될 것 같았다.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를 방문하였다. 담당 사무관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
니 쉽게 이해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수긍해 주셨다. 제도개선
을 권고 받는 부처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
은데 이번 일은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의 열린 마음으로 쉽게 제도개
선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뒤 제도개선안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고되었다. 해당 부
처에서 이번 개선안이 시행이 된다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한층 강
화 되리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번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하였
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내
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 역시 큰
기쁨이었다.

아내에게 이 내용을 전하니 무척 기뻐했다. 말은 안했지만 아내는 국민의 고충을 없애고 부패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남편이 조금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아내는 주변 사람들이 겪는 사소한 문제점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가 나에게 열심히 귀뜸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일상에서 겪는 이웃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눈 속에 고인 눈물

110콜센터 윤 정 희

“한 시간 전에 통화한 사람인데요…”

젖은 숨처럼 물기가 가득 배어 서성이듯, 일말의 머뭇거림이 남아 있는 말투.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보다. 이들은 내가 마약 태어나는 순간에도 훌쩍거리고 있었다. 이조백자 같던 할머니는 고대하던 금줄

이 아니라 썩썩해 울었고, 그제나

저제나 허약했던 엄마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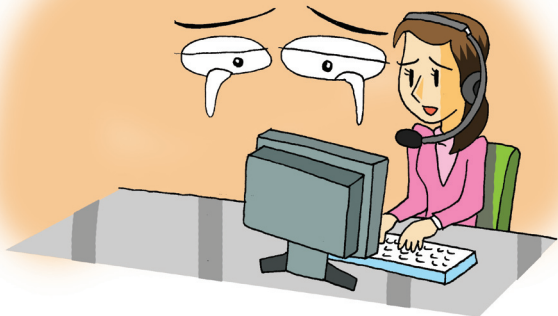
가 너무 아프다며 동동

동 울었다. 눈도 안 뜬

상태였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내

곁에는 눈 속에 눈물이



고인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고…. 지금 막 수화기를 통해 만난 이 사람도 얼굴은 모르지만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나와 통화를 하기 전 이미 다른 상담사를 통해 보건소로 연결이 되었지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거동이 불편한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참전유공자인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경기도 ○○시에 있는 집에서 ○○동 서울보훈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했다. X-ray 확인 결과 폐렴증세를 보였고 보훈병원 측에서 민원인 집과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치료할 것을 안내해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했으나 흉부외과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몇 군데 위탁병원을 수소문하다가 다행히 ○○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

병원으로 모셨다고 한

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 병원장

이 “우리는 손을 못

댄다.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라며 진료

를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



다가 다시 ○○동 보훈병원으로 아버지를 옮겨 온 상태라고 했다.

“애기가 길어져 미안합니다. 근데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잠깐, 우웅~~ 그렇게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다. 목울대를 젖은 수건마냥 꼬옥 짜면 민원인의 슬픔이 수화기를 타고 샘처럼 흐를 것만 같아서 이기도 했고, 생의 절실한 한순간을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의탁하는 민원인이 가엾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콜센터라는 곳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내게, 업무의 매끄러운 스킬이 뭔지도 모르는 내게 도와달라고…. 몸집이 커다란 어른 곰 한 마리가 뚜벅뚜벅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가만 엎드려 죽은 척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담하게 굴어야 할까, 순간적으로 오만 가지 그림을 그렸다가 지워야 했다.

그러다 펄떡,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상담이라는 것에 답이 있을까? 길을 걷다 넘어진 사람에게 어느 병원에 가보라고 정확하게 갈 길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다친 데는 없는지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다. 여유랄까, 뭐 그런 편안함 같은 게 내 몸과 마음을 감싸고 돌아왔다.

“식사는 하셨어요?”

조금은 뜬금없게도 나는
이렇게 물었던 것 같다. 당
장 소관부서를 확인하고 일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할 수
도 있었지만 그리고 싶지 않



았다. 그런 상담이라면 어느 정도의 업무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
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인은 그날 하루 동안 여기저기서 차이고
차이다가 110번으로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된 분이었다. 인간으로서 존중
해 드리고 싶었고 상처를 받은 곳이 있다면 다독거리주고도 싶었다.

그런데……

눈물을 물고 다니는 운명의 소유자답게 나는 결국 의도와는 다르게
민원인마저 울리고 말았다. 그제 식사하였는지를 물었을 뿐인데 민원
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몸집이 커다란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
럼 훌쩍거리는 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왔다. 그런데 부모가 제 살을 다 토해내 지은 고치 안에서 보호받고 살
던 아들이 그 고치 속에서 빠져나와 넓고 해진 고치 안에 든 늙고 병든
부모를 마주하는 순간 다 큰 어른도 울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처음으
로 알게 되었다.



아픔을 건드린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곧바로 전
화를 드리기로 하고 서둘
러 상담을 마쳤다. 먼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
터 쪽으로 문의해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보훈의
료과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보훈의료과 담당자와 민원
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었다. 그렇게 상담을
마쳤고 다음 날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결과를 물어보니 아버지는 다
행히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떤 민원인이 나를 찾는다는 메모를 받았다. 어제
그 민원인이었다.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하며 전화
를 했는데 민원인은 어제 상담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 일부러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현재 치료 중이고 간병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와 상담 후 힘도 나고 일이 다 잘 풀
리는 것 같다고 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밥은 먹었는
지 신경 써서 물어봐준 것이 처음이었고, 이 세상에 그래도 나 같은 사
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러면서 그는 상담센터로 과자나 초콜릿을 보내주겠다고 한다. 나는 전화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고 전하며 과자나 초콜릿을 보내시면 큰일 난다고 짐짓 과장되게 굴었다. 이렇게 민원인과 따뜻한 대화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전화를 타고 그의 마음까지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린다. 저 수화기를 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화기 건너편의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까지 보태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따뜻한
마음**



영농손실비를 보상해 줘요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김 영 일

늦은 저녁 야근을 하고 있었다. 9시가 넘어갈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굵직한 목소리로 강원도에 사는 김○○라고 자신을 밝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패기가 넘쳤고, 다소 격한 말투는 마치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 거리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십수 년 동안 공들여 가꾸어 왔던 국유지 땅이 관광개발 지역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단다.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자세히 듣고 싶었지만 그의 감정이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약 20여 분이 지나자 서서히 목소리 톤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억울함이 풀리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말문을 열었다. 강원지역에서는 영농의 귀재로 불릴 정도로 그의 영농기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이, 애호박,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180% 이상의 풍작을 일궈내곤 했단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강원도 ○○시에서 그의 토지를 관광개발 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보통 사

람들은 1모작 또는 2모작을 하더라도 100% 내외의 수확량을 올리고 있지만 그의 영농기술은 타인의 영농 법과 달라 평균 180% 이상을 경작하고 있으



므로 영농손실비도 그만큼은 보상해야 한다.

일단 상황을 파악한 뒤 연락을 다시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뒤 강원도 ○○시에 문의를 해보았다. 시에서는 난색을 표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농산물 출하량이 130%를 초과할 경우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나 보상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에서는 130% 이상의 영농손실비는 지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민원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터라 시는 어서 빨리 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워낙 강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고민이란다.

양 쪽의 입장을 듣고 나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보상이라는 원칙에는 서로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보상하느냐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 곧바로 영농보상비 지급 방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판례나 법령 등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그런 뒤 며칠 후 강원도 ○○시로 전화를 했다. 민원인과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보상금액이라고 한다면 크게 염려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찾았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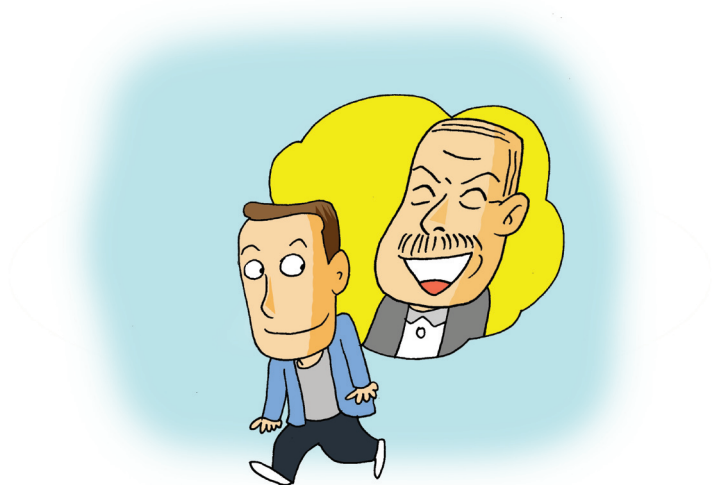
관련규정에 따르면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통계청의 계산 방식과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의한 계산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



런데 농촌진흥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계청보다 약 5배 정도 더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농촌진흥청 계산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참석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잘 마무리가 되었다. 김 할아버지의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다. 김 할아버지 입장에서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 시로서도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일이 해결이 되어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단순한 법리적 접근 뿐 아니라 그래도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가 얹힌 것이라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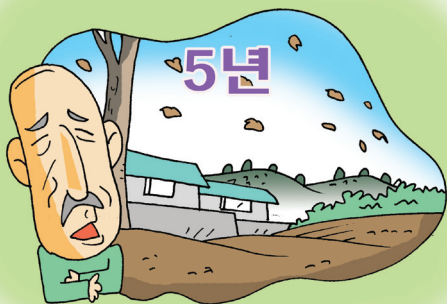
이튿날 김 할아버지에게서 감사의 전화가 왔다. 강원지역을 지날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 달라고 했다. 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강원 지역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이다.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다. 처음에 성난 사자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유쾌한 목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그의 행복한 미소를 상상하면서 말이다.



딸아이와 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주택건축민원과 이 재 성

2009년 12월 유난히도 추웠던 어느 겨울날,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우리 위원회를 찾아오셨다. 여든이 넘으신 고령으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말씀까지 어눌하셔서 상담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할아버지의 억울함과 하나밖에 없는 딸과 한 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같이하고 싶다는 소망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간절해 보였다.



할아버지의 사연은 이러하다. 2003년 9월경 할아버지는 ○○부처의 추천을 받아 ○○아파트를 특별공급 분양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으셨던 할아버지는 계약일을 3일 앞두고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말았다. 결국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더 아쉬운 일은 그 뒤로 더 이어졌다. 계약을 못해서 그렇게 된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추천을 받고자 했는데 이미 한 번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5년 후에야 재추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몸이 아파 입원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일이라고 여기저기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지만 해당 기관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결국 할아버지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재추천을 받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했다.

세월이 흘렀다. 5년이 지났고 할아버지는 2009년 여름 재추천을 받기 위해 해당 부처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처 담당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2007년 8월 24일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3년 9월 당
첨 사실이 있는 할아버지께는 더 이상 재추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라는 해당 부처의 말만 믿고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는데 이
제 와서 안 된다니!

더욱이 할아버지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끼리 서로
결정권이 없다며 여기저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추천부
서인 ○○처는 공급부서인 ○○부에서, ○○부는 집행기관인 ○○원
에서, 집행기관인 ○○원은 공급부서인 ○○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고 미루면서 할아버지의 민원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민원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하
던 중 “모순이 있지만 법은 법이고, ○○부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분에게도 여러 번 답변 드
렸고 ….” 라고 답변하던 관련기관 담당자는 질문과 설득을 여러 날에
걸쳐 계속 해나가자 “이렇게까지 열성적이신 걸 보니 혹시 친아버님
아니세요?” 라며, 진담반 농담반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 순간 나도
그냥 웃어 넘겼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친아버지 생각이 났다. 돌아가시
기 전에 딸과 함께 사시려는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

지도록 도와 드리고 싶었다.

이후 그때까지 검토된 관계 법령 및 판례와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의결서 작성을 시작하였다.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입각하여 써내려갔다. 이후 내부 검토 과정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경 드디어 관계 부처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재추천을 제한하고 있는 ○○공급에 관한 규칙 조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못하게 되어 5년을 기다린 할아버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했다. 그러나 관계 부처 담당자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거듭 확고한 어투로 할아버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다.



거듭된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지난 2010년 2월 경 관계 부처는 권고 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

한 법적안정성 및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예외적인 허용은 수용 곤란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불수용 통보를 해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다. 여기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할아버지의 희망을 저버리기에는 안타깝기도 하고 스스로도 용납이 되질 않았다.

해당 기관은 우리 위원회 권고와 달리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보기로 하였다. 한편 해당기관의 수용불가 입장이 지속되자 할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젠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겠지요? 이 놈들은 자기네들이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럴 수 있는 건지…”

할아버지는 푸념어린 어투로 억울하고 분함을 호소하였다. 그런 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다. 아마 전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 포기를 하셨나보다 생각했지만 나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1개월여 지난 2010년 5월경 법제처로부터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결과문에는 “2007. 8. 24. 「○○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

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
은 위 횡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
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



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며칠 후 해당 부처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주택을 공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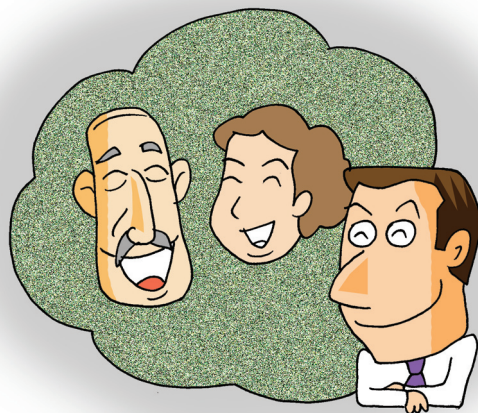
드디어 할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바라시던 대로 딸과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내 아버지의 일은 아니지만 마치 아버지의 일이 해결된 것처럼 무척 반가웠다. 이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곧장 전화를 해오셨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기에 포기했는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딸과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이 느껴졌다. 나 역시 할아버지에게 기쁜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저도 무척 기쁘네요. 이제 그동안 소망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니 떠남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한동안 할아버지의 행복에 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인이 된다는 것, 업무를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 이 모든 것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가스 요금을 낼 길이 없어요

110콜센터 한 미 화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

퇴근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걸려온 전화기 너머로 민원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도 소득이 여의치 않아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미 여러 가지 공과금이 체납된 상태였다. 그 중에서도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걱정이었다. 처음 미납이 되었을 때 도시가스 회사에 사정을



호소하여 몇 차례 납부를 미뤘는데 체납이 계속되자 도시가스 회사에서 요금을 분납해서 내는 방식을 권해줬다. 그 뒤로 매월 가스요금 일부를 납부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는 형식으로 힘들게 지내 왔다.

그런데 얼마 전에 수해를 당해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분납으로라도 내던 도시가스 요금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되자 결국 도시가스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사정을 봐 줄 수 없으니 수해복구비용이라도 받아 도시가스 요금 체납액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책임자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뒤로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시 그물망 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복지 담당자는 2개월 분납까지만 조정해 줄 수 있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2개월 분납조차 너무 부담이었던 입장에서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지 2주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110을 알게 되어 전화를 하게 되었다.



우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를 건넨 뒤 도시가스공사 상위기관인 지식경제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내일 오전에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리겠노라 통화를 마쳤다.

민원인은 “좋은 꿈 꺾야겠네요.”라며 기대를 보이고 전화를 끊었지만 지식경제부에서 도움을 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울리는 전화 상담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민원내용만 듣고서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던 셈이다.

다음 날 오전 일찍 지식경제부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니 담당자는 해당 민원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시 ‘녹

색환경정책담당관실’에서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

된 중재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라는 희망적인 이야

기를 해주었다.



기대감을 갖고 서울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담당자는 너무나 흔쾌히 해당 도시가스 회사로 권고 또는 협조요청을 해보겠다고 했다.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순조롭게 방법을 찾게 되자 전화를 거는 내 마음이 저절로 가벼워졌다. 서울시 담당자가 도시가스 회사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니 민원인은 정말 고맙다고 여러 차례 인사를 한다. 바로 다음 날 잘 해결이 되었는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다.

“제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주셨군요~ 애써주신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에서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다. 감사하다며, 고맙다며 즐거워하는 민원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110번으로 전화 달라는 말이 자신 있게 나왔다.

기쁜 마음이기도 했지만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성급히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떤 민원이든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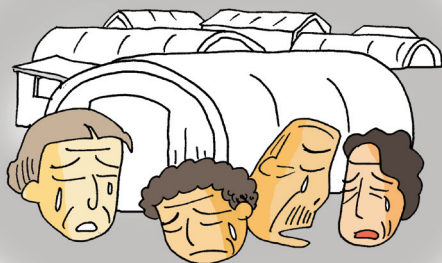
해결하려는 노력!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꿈

도시수자원민원과 임 병 록

유난히 추운 올 겨울, 도시개발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인천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게 이번 겨울은 더욱 힘들게 다가왔다.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은 올 겨울을 생각만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신다. 태풍 곤파스로 지붕이 무너지고, 바람이 새는 등 집 안에 성한 곳 하나 없지만 그래도 30여 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막 추워지기 시작하던 작년 11월 27일, ‘개발의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제목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다. 30~40년 전 오갈 데가 없어 인천 도화동에 3~4평 되는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빈손으로 길거리에 쫓겨나게 되었다며 사람의 살아갈 권리는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각 기관에 민원도 내보았지만 한결같이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를 찾은 것이라고 한다.

마침 무허가건축물 밀집촌, 다른 말로 비닐하우스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참이었다. 그래서 다른 민원보다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민원서류에서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먼저 현장에 가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로 했다.

민원 현장은 인천시 ○○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부근도 종종 왔었지만, 여기에 300여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무허가 집을 짓고서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이제는 ○○대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비어 있고, 예전 ○○대학교 건물도 철거가 진행되어 황량한 모습이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마저도 대부분은 이주하여 마치 유령도시 같아 보였다.

마을을 둘러보니 일부 멀쩡한 건물도 있었지만 어떤 집은 화재가 나서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움막 같은 곳에 세 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데, 누구라도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그 처참함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 곳에 아직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집에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어 누가 보면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방 한가운데에는 손자의 사진도 걸려 있다. 할머니께 자식 분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고 여쭙봤다.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할머니께 용돈을 드릴 형편은 되지 않는다며, 할머니가 심장 수술을 하면서 아들도 빚을 지게 되어 아들 내외도 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는 받지 못하고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노령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연탄을 사고 밥과 김치만 먹는 데도 한 달을 살기가 버겁다고

했다. 나도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고 하니, 혼자 별

어서는 부모님께 용

돈을 드리기 쉽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할머니의 아들 내외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이곳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어렵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이다. 개발사업으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예전 ○○대학교 부지를 무단 점유하여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 안 되는 보상금마저도 전부 압류되었다. 오히려 이곳을 떠나면서 그동안 토지 사용료로 누적된 변상금을 갚아주고 나가야 할 판이다. 이 추운 겨울에 빈손으로 쫓겨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장을 살펴본 뒤 관계기관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다들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으며 그동안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재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이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공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체납, 이에 따른 보상금 압류문제도 그렇지만 이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모르고 있어 활용이 안 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살고 있는 쪽방, 비닐하우스 주민들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다. 도화동 주민들의 주거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뒤가 더 문제였다. 지금 당장 임대 주택이 부족해 집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행히 임대 주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해온 할아

버지, 할머니들은 월세를 내며 살아갈 형편도 되지 않아 결국에는 다른 무허가촌을 전전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 여기 도화동 주민들,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에서 이 민원을 마무리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 마을에 발생한 근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립할 능력이 전혀 없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

이처럼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민원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얹혀 있어 한 개 기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였다. 이들

이 앞으로 정상적인 주거환

경에서 정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서 주거문제보

다는 일자리나

복지에 더 신

경을 써야 했

다. 다행히도 관계





기관에서도 도화동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

논의를 거듭해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우들에게 일정기간 주거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제도를 연계해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작년 12월 7일 부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드디어 도화동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좀더 나은 주거환경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조정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차적인 주거대책을 넘어서, 이곳 주민들이 진정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고

민하고 노력한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무허가건축물 거주민의 안정적 이주부터 정착·자립까지 고려한 최초의 민원해결 사례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관협의하여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새롭고 시험적인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주택공급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복지적 시각에서 이들의 정착·자립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비닐하우스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과도기에 있으니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은 더욱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대불산업단지 내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보훈민원과 이 효 상

작년 한 해 동안 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하고 관련사실을 확인하며, 자문을 의뢰하고 교육, 회의에 참석하는 등 어느 해보다 더욱 바쁘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다.

특히 작년은 군사보호구역 주변의 주택이나 공장들이 건축을 하려 할 때 필요한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이 유난히 많았다. 이런 일은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도 고려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군부대의 작전임무 수행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민원이 있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려고 한다.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제일 먼저 행동으로 시범을 보인 것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전봇대이다. 많은 사람들

이 알다시피 대불산업단지의 중소기업체들이 생산, 조립한 대형 선박 블록이 산업단지의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 때문에 수송이 어려워 기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따끔한 경고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정부가 중소기업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한 대불산업단지에서 고충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대불산업단지의 일부가 폭발물 관련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분양받고도 그 토지에 전혀 공장을 신축할 수 없거나, 일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

는 공장을 신축할 수 없어

공장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폭발

물 관련 군사보호

구역은 군부대의

군사작전을 위해

서라기보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해서 설정한 것인데 그 안전성을 깨뜨리고 자신을 위험 지역으로 몰아넣어 달라는 것이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졌다. 많은 민원이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제도를 반박하며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대불산업단지도 이미 다른 산업단지들과 마찬가지로 옛날의 호황기를 추억 속에 묻어둔 채 조용하고 평화롭게 남아 있었다. 군부대를 방문하여 폭발물 관련 군사보호구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대불산업단지의 민원기업체들을 방문하려 했으나 어느덧 해가 기울어 내일로 미루고 산업단지 주변에서 숙소를 정했다. 산업단지 입구에 목포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었으나 길거리 상가와 식당에는 지나 다니는 사람도 없이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나는 곧 이러한 느낌이 서울에서 온 이방인이 느끼는 사치스러운 감정이란 것을 깨달았다. 상가와 식당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텅 빈 매장과 식당에서 하루를 보내는 주민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저곳 대불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식당에서 시끌벅적하게 저녁을 먹고, 한쪽에선 가족들이 웃으며 쇼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다음 날 방문한 대불산업단지에서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고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어 해외 수주가 물 건너가게 되었어…”

“1995년경에 군부대와 군사보호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방벽공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야. 쓸데없이 방벽공사에 돈만 갖다 버렸지 뭐야…”

“20년간 청와대, 건교부, 국방부 등에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군부대의 답변만 전달하고 끝났었어.”

이들의 이야기는 뉘트리와 하소연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유는 외침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아니,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 결국 조사관의 근성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도대체 군사보호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기에 이렇게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까?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지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의 자체적인 검토 결과를 전달해야지 군부대의 답변을 전달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이라면 우선 탄약고를 알아야 한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을 통해 탄약고에 대한 공부를 했다. 처음엔 무모한 조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아무도 모르게 살피봤다. 그리고 난 후 정밀 광학측량기를 이용하여 보호구역 일대를 측량했으며 동시에 1990년경 이후부터 국방부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탄약고 관련 자료와 관련 규정을 수집했다. 해당 분야 지식습득과 자료 수집은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상대는 일반부처가 아닌 국방부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기업체들에게 군사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답변을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으나 검토 결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검토 과정은 필자의 개인적 조사방식 또는 군사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상세히 설명하기
는 어렵지만 조사결과를 기초
로 수차례 외부인과 내부인
을 포함한 입체적인 검토를
해보니 놀랍게도 폭발물 관
련 군사보호구역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그동안 검토하여 판단한
내용을 정리하여 머릿속에 꼭꼭 입력한 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
을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어디가 잘못
된 것인지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며 민원 취지, 그동안의 경과 내용, 우
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방부의 협조 요구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했
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긴장으로, 다른 사람들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라는 사
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과 비슷한 긴장감이
었을 것이다.

“우리 위원회의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의 설
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리이러한 검증이 필요하고...(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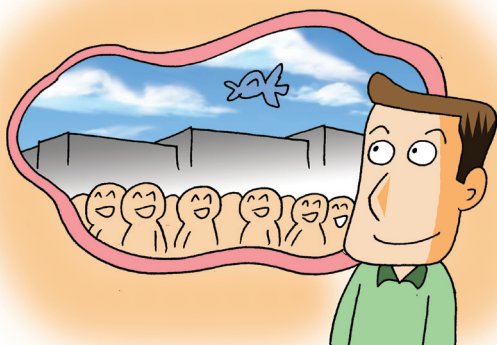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잘못 판단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검토내용대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넘게 힘들게 독학으로 공부한 노력이 마침내 성과를 이루었다. 야간근무와 휴일에도 집에서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룬 피곤함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동안 조사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던 몇몇 군 관계자에 대한 원망도 모두 없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민원을 제출한 기업체들도,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영암군청 관계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관계자, 그동안 내 자신이 직접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소극적으로 임했던 몇몇 사람들,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 모두가 고마웠다.

오랜 기간 힘들었던 조사과정을 뒤로 하고 2010년 6월 24일 8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정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대불산업단지 군사보호구역 민원은 종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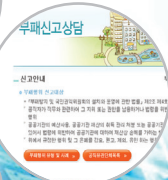
그 이후로 다시 대불공단을 찾은 적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불공단이 활성화되어 국가산업단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주민, 나아가 국가 전체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다시 그곳을 갔을 때 거리와 상가가 사람으로 북적이는 활기찬 풍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억울함 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억울함이 없는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갑니다.

설립 배경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출범했습니다.

하는 일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발생의 예방·적발을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보호

심벌마크

국민권익위원회의 심벌마크는 국민권익위원회 C.I의 기본요소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의 성장과 힘을 상징하는 **오렌지**(Orange)와 청렴사회를 의미하는 **블루**(Blue), 공정과 창의행정을 뜻하는 **그린**(Green)의 어우러짐으로 화합을 표현했습니다.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출발을 의미하는 '씨앗' 모양을 담았습니다.

또 국민을 섬기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뜻에서 팔 벌린 사람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답답한 고충민원,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인터넷(www.epeople.go.kr),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 없이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하신 고충민원은 전문조사관의 현장조사, 출석조사, 서면조사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유형

- **시정권고** :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표명** :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 의** : 권익위의 합의 권고 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로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권익위가 확인한 경우
- **조 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권익위의 직권으로 당사자가 조정서에 기명 날인 후 권익위가 확인한 경우로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 **기 타** : 각하 또는 이송, 이첩

군사, 경찰 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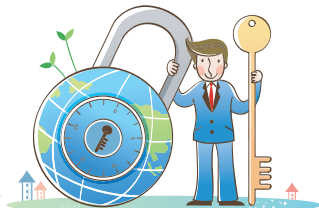
군 생활이나 경찰로부터 침해된 권리 등 군·경 관련 기관의 고충민원도 처리해 드립니다.

기업 ombudsman

영세상공인 중소기업·주한외국기업에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의 해결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ombudsma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 서비스

시·군 지역별 민원현장을 비롯하여 국민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접수·회신까지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공직자의 부패행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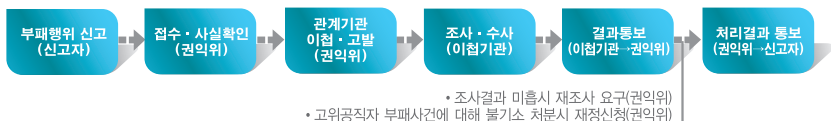
부패행위 신고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한 후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과다 경조금품 수수
- 공용물(예산 사용 부가서비스 포함)의 사적 사용·수익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한 특혜 또는 차별
- 소속 기관의 명칭·직위의 사적 이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권개입·알선·청탁 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로 인하여 파면·정직·포핵·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비용절감을 가져온 때에는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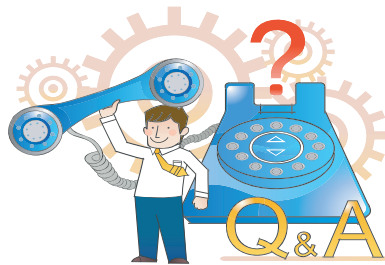
행정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쟁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 · 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 · 과징금 · 부담금 부과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처분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가행정기관의 장 등의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 재결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사건은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민원신청 • 국민제안 • 정책토론 • 부패신고 • 행정심판

스마트폰 앱(APP)을 다운받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정리한 '민원 · 정책 Q&A'는
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Daum NATE

세계 최고의 온라인 국민권익보호 시스템



정부대표전화 110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317개 모든 행정 기관의 업무 및 정부민원에 대해
110전문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유 · 무선 전화상담은 물론,
인터넷 예약상담, 휴대전화 문자상담, 화상전화 수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 상담분야

일반 민원 주민등록 · 인감 · 자동차등록 · 운전면허 · 여권 · 병무 · 보호 · 정부통계 등
사회안전망 일자리 안내 · 기초생활수급 · 서민금융 지원 · 채무상담 · 보육비 지원 등
세금 · 공공요금 양도소득세 · 과태료 · 주민세 · 근로장려세제 · 수도요금 · 연말정산 등
생계참여 신고상담 불법자금 · 임금체불 · 취업사기 · 보이스피싱 · 교통불편신고 등



● 상담시간

- ▶ 평 일 : 오전 8시 ~ 밤 9시
-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 해외상담 : 82-2-2012-9110
- ▶ 홈페이지 : www.110.go.kr
m.110.go.kr





다시 찾은 **이상**
다시 찾은 **웃음**

권익위 조사관들이 국민과 함께 겪은 현장의 감동 이야기

2011년 3월 24일 인쇄

2011년 3월 24일 발행

발 행 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360-268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www.acrc.go.kr

디자인/인쇄 | 사) 남북장애인교류협회 [☎ 739-3842]